

(재)충남경제진흥원 공고 제2025-156호

2025년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판로지원」 2차 모집 공고

(소상공인 온라인 홍보·광고비 지원)

충청남도과 (재)충남경제진흥원에서는 자발적인 온라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이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후 지원하는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판로지원」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9월 11일

(재)충남경제진흥원장

1. 모집개요

(지원규모) 100업체 내외

(지원대상)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2024. 8. 31. 이전 소상공인

- 2025. 1. 1. ~ 10. 31.(금)까지 온라인 홍보·광고 지출완료 건에 한하여 지원

< 소상공인 범위 및 판단기준 >

- 소상공인 범위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 밖의 업종)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주업종 판단기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또는 수입금액증명)에 명시된 업종

※ 지원 제외 대상

- 접수 마감일 현재 소상공인이 아래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및 사치 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소상공인

• 신용 거래 불량 등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소상공인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기준)

- 기타 사업 공고 시 제시한 신청자격 및 참여조건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관련하여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신청 이후 위 사항이 밝혀질 경우 선정 제외 또는 취소

- 아래 지원사업 수혜업체(중복지원방지)

• 23년~25년 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도비)

• 25년 경영위기 소상공인 재기지원(경영개선_상반기)

2.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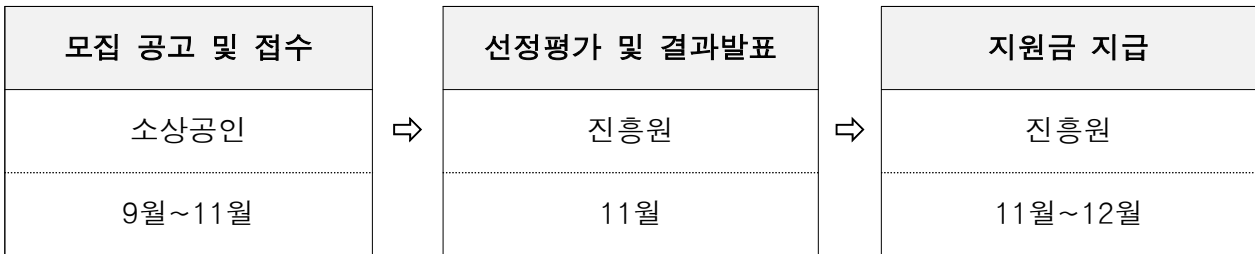
- 온라인 홍보· 광고 비용 지원(최대 150만원 이내)
 - 2025. 1. 1. ~ 10. 31.(금)까지 지출완료 건에 한하여 지원가능
 - 공급가 기준 지원
 - *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만 인정
 - * 카드사 홈페이지·앱 발급 매출전표만 인정(공급가액, 세액, 해외수수료 포함내역)
 - * 종이 카드영수증 불인정(인쇄 내용 소실, 추후 검증 및 사후관리 문제)
 - 프랜차이즈 업종 등 가맹본부가 집행한 홍보비용은 지원 불가
-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 소상공인 자부담
- 지원분야(4개 분야 중 택1)

분 야	세부내용(예시)
검색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채널, 검색채널 등에서 검색어 입력 시 업체 노출 광고 예시) 유튜브 키워드, 네이버 플레이스, 콘텐츠 검색 광고 등 ※ 지원불가: 비즈머니 충전(소진비용에 한해 지원: 전자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
쇼핑몰 (오픈마켓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쇼핑몰 입점 수수료 비용, 쇼핑몰 내 노출 광고 등 예시) 쿠팡 및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배너광고 등
소셜마케팅 (S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페 등 활용한 광고 예시) 인스타그램 게시물 노출, 카카오페이 배너, 인플루언서 활용비 등 ※ 1회 포스팅 최대 20만원까지 지원가능(실제 마케팅 여부 확인) ※ 지원불가: 인스타그램 등 좋아요 및 팔로워 수 구매 등
배달 중개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땡겨요,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당근마켓, 야놀자 등 중개 플랫폼 활용한 광고비용 등 예시) 배달의 민족, 야놀자 노출광고 등 ※ 지원불가: 배달비용, 판촉 쿠폰비, 판매 수수료

※ 대행업체는 지원분야와 연관된 전문업체와 진행하여야 하며, 개인과의 거래는 지원 불가

※ 지원불가: 홈페이지, 상세페이지, 영상 등 제작비 및 판촉비

3.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신청·접수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 2025. 11. 9.(일)

(신청방법) 충남경제진흥원 통합지원시스템

※ 통합지원시스템 URL : <https://www.cnsp.or.kr>

※ 회원가입 후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판로지원” 검색

(제출서류) ※ 제출서류 누락 등의 경우 평가제외

구분	순번	신청 시 제출서류
신청 서류	1	[서식 1] 지원사업 신청서
	2	[서식 2] 마케팅 결과 보고서
	3	[서식 3] 마케팅 증빙서류(마케팅 결과물 및 지출증빙)
	4	[서식 4] 개인(기업)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5	[서식 5] 지원사업 참여 협약서
	6	통장사본
소상 공인 확인 서류	7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 이후 발급분)
	8	지방세 납세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체납 시 접수 불가
	9	매출액 확인 서류(2023년~2024년)
	10	고용인원 확인 서류(공고일 이후 발급분)
가점	11	기타 가점사항에 적합한 증빙서류

주1) 발급 서류 중 열람용은 인정하지 않으며, 도장(또는 서명)이 찍혀 있는 서류만 유효
 주2) 글자 또는 숫자 식별이 어려운 서류는 심사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5. 평가 및 선정

□ 선정방법

- (선정절차) 1차 정량평가(내부, 서면) → 2차 정성평가(외부, 서면)
- (1차, 정량평가) 지원 자격 적격여부 판단 및 서류평가 후 1.2배수 선정
 - * 적격여부, 중복수혜, 서류 미비 등 검토
 - * 1차 심사기준: 매출 상승률, 고용인원, 업력
- (2차, 정성평가) 외부전문가로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후 서류 평가
 - * 2차 심사기준: 업체 소개 및 마케팅 방향성, 성과, 콘텐츠 적절성 및 품질, 지속 가능성
- (가점사항) 최대 10점, 증빙서류 미제출시 불인정 ※공고일 이전 발급분
 - 24~25년 국가 또는 충남도 지원사업 마케팅 교육(3시간 이상) 이수자
 - 24~25년 국비사업(중기부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 대학) 참여 업체
 - 25년 해외 온라인 마케팅 수출연계
 - * 해외 플랫폼 판매 실적 리포트(아마존, 쿠팡 등에서 발생한 실제 매출 내역)
 - 충청남도 또는 충남 시군에서 발급한 명인 또는 명장 증서 보유 업체
- (선정방법) 정량평가(40점) + 정성평가(60점) + 가점 합산 고득점 순
 - * 동점자 발생시 업력이 오래된 順
 -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합산 6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 미선정 업체 중 평가 합산 60점 이상인 업체는 고득점 순으로 예비순위 부여
- (선정규모) 100업체 내외

6. 유의사항 및 문의처

(선정취소)

- 신청서류는 모두 필수로 제출(서류 미비 시 평가 제외), 선정 이후라도 서류 중 파일 첨부가 잘못되었거나 서명 및 도장 누락 등 제출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미선정 될 수 있음
- 신청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유사도가 높은 계획서 제출(평가위원 평가에 따름) 등 발견될 경우 평가 시 탈락 처리되며, 선정 이후라도 선정취소 될 수 있음
-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금년 중 본 사업과 동일·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지원금 지급 방식)

- (지급처) 선정업체(소상공인)에 직접 지급
- (지급조건)
 - 온라인 홍보·광고 외 소요되는 비용 지급 불가
 - * 부가가치세, 송금 수수료, 해외 수수료 등
 - 기간 내 온라인 홍보·광고 및 비용 집행이 완료된 건에 한하여 지급
 - * 온라인 홍보·광고 관련된 비용 집행 건(전자세금계산서, 대금 지급 등) 증빙 필수
 - 선정평가(신청금액 및 증빙) 후 불인정 금액 감액하여 지급될 수 있음

(기타 유의사항)

- 사업신청은 온라인(통합지원시스템)으로만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 이후 제출 불가하오니 기한 준수
-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업체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
- 지원사업 종료 후 1년간 성과관리(매출 및 성과 등)에 대한 협조 요청에 응하여야 함
- 소상공인 본인과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대행업체 선정 불가
- 사업 종료 시점(연말 기준)까지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성과 미이행으로 간주, 지원금 환수 또는 향후 3년간 충남경제진흥원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고문 유의사항 등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문의처) 충남경제진흥원(보부상 콜센터) ☎ 041-424-4000

참고 1

제출서류 발급 방법

구분	제출서류	발급방법
1	[서식 1] 지원사업 신청서	충남경제진흥원 통합지원시스템 서식 후 다운로드 작성
2	[서식 2] 마케팅 결과보고서	
3	[서식 3] 마케팅 증빙서류 (마케팅 결과물 및 지출증빙)	
4	[서식 4]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5	[서식 5] 지원사업 참여 협약서	
6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 이후 발급분)	온라인발급: 홈택스 오프라인 발급: 관할 세무서
7	지방세 납세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온라인발급 : 정부24 오프라인 발급 - 시/군청, 읍·면·동사무소 방문 발급
8	매출액 확인서류(2023년~2024년)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 면세사업자수익금액증명원	온라인 발급: 홈택스 오프라인 발급: 관할 세무서
9	고용인원 없는 경우(공고일 이후 발급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모바일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앱 오프라인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 무인발급기 또는 지사방문
	고용인원 있는 경우(공고일 이후 발급분)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온라인 발급: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오프라인 발급 -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지사방문

※ 진흥원에서 기타 증빙자료 요청할 수 있음

참고 2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9.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9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참고 3

지원제외 업종(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준용)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희주점업
56212	무도유희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표준산업분류	업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 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 가능